

4.5.7 학생회관관리규정

제정 2000. 04. 21.

개정 2009. 09. 07.

개정 2018. 07. 26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초당대학교 학생회관을 관리함에 있어 총학생회와 산하기구·실·각 동아리방 및 학생편의 시설에 관한 사용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인 학생활동과 능률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관리) 1. 학생회관의 모든 관리는 학생복지처에서 관장한다.

2. 학생회관의 개방된 시간 이후(22:00 ~ 익일 07:00까지)와 토요일에는 학생복지처 직원과 당직근무자가 관리한다. <개정 2018.07.26.>

3. 학생복지처는 필요에 따라 관계처장의 승인을 얻어 학생회 또는 동아리로 하여금 질서유지에 힘쓰도록 할 수 있다. <개정 2018.07.26.>

제3조(각실 배정) 1. 배정

가. 지하층에는 보일러실, 전기실 등을 둘 수 있다.

나. 1층에는 학생식당, 교수식당, 매점 등을 둘 수 있다.

다. 2층에는 휴게실, 매점, 이용실, 체력단련실, 오락실, 서점, 양호실, 전시실, 열람실, 학생복지처 등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18.07.26.>

라. 3층에는 문화센터 및 후생복지과 등을 둘 수 있다.

마. 4층에는 총학생회 및 산하기구와 각 학회실, 동아리방 등을 둘 수 있다.

2. 각실 및 동아리는 본 지침을 준수하고 학생과에 등록된 자에 한해서 실을 배정한다.

3. 일차 배정된 실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, 동일 층에서 이동시는 학생복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18.07.26.>

4. 부서별 각층 이동은 기획연구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8.07.26.>

제2장 준수사항

학생은 학생회관 내의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창의적인 활동을 위하여 다음의 조항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.

제4조(일반준수사항) ① 학생은 학생회관 내 개폐 시간을 준수한다(07:00~22:00까지)(단, 방학기간은 예외로 한다).

② 학생회관내 모든 행사 및 집회는 개방시간 동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학생복지처의 승인을 받아 해당지도교수 지도 아래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07.26.>

③ 학생은 각종 학생시설물(전기, 급수 등)을 아껴 쓰고 공중도덕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5조(시설 및 비품이용) ① 학교비품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지침에 따라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

② 모든 학교비품은 지정된 장소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이동해서는 안 된다.

③ 모든 학교시설 및 비품을 일시적으로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생복지처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8.07.26.>

④ 학교시설물 및 비품파손이나 고장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없이 학생복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07.26.>

제6조(광고게시물 및 간행물) ① 학생회관 내 광고 및 게시물 게시와 간행물을 발간할 때에는 사전에 학생복지처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8.07.26.>

② 학생회관 내 광고게시물 부착은 지정된 장소 외에는 어떠한 곳에도 게시할 수 없다.

제7조(학생회관 각실 및 동아리방 이용) ① 개방시간 이외에 각방에 남아있거나 취침을 절대 금한다.

② 학생회관에서 음주 및 위사행위를 절대 금한다.

③ 학생회관에서 세탁 및 건조는 절대 금한다.

④ 학생회관에서 전열기구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.

⑤ 각방에 비치된 비품은 해당방 밖으로 절대 반출할 수 없다.

⑥ 학생은 배정된 방을 사용하여야 하고 무단히 타 동아리방을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.

⑦ 학생회관 내에 주류 및 인화물질(부탄가스, 유류), 동물 등은 반입할 수 없다.

제8조(위생 및 안전유의) ① 학생회관 내 위험하고 위생에 해로운 물품의 반입을 절대 금한다.

② 위험이나 긴급사항은 즉시 학생복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07.26.>

③ 옥상이나 비상출구는 비상시 외에는 사용을 금한다.

제3장 상벌 및 처리

제9조(변상) 학교시설물 및 비품을 분실하였거나 훼손이 있을 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.

① 1차는 본인이 변상한다.

② 2차는 각 해당 동아리회장이 변상한다.

③ 3차는 학생회에서 변상한다.

제10조(상·벌) ① 제4조, 제5조, 제6조, 제7조, 제8조의 각 1항을 위반할 때는 벌점 5점을 주어 <별표 1>과 같이 처리한다.

② 벌점의 부과는 학생복지처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복지처에서 부과한다. <개정 2018.07.26.>

③ 대학본부에서 위험하고 심히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할 때에는 동아리방을 즉시 폐쇄할 수 있다.

④ 우수동아리 및 회원은 학교에서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.

⑤ 모든 벌점은 1년이 경과하면 자동 소멸된다.

제4장 보 칙

제11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을 준용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<별표 1>

처별구분	대 상 별 점	비 고
시정 또는 주 의	· 10점	동아리 지도교수 통보
경 고	· 20점	게시판 공고, 해당 학과장 및 동아리 지도교수 통보
폐 쇄	· 30점 · 기타 년 3회 경고 동아리 · 매학기별 활동 부진 동아리 · 목적에 위배된 활동을 한 동아리	게시판 공고 및 동아리방 폐쇄